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31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배준영 · 이인선 · 김정재
최수진 · 조승환 · 추경호
김위상 · 우재준 · 이현승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말·체험영농”을 “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같

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접경지역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접경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②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주말·체험영농</u> 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u>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u><신 설></u>	3의2. <u>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u>

4. ~ 10.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② (생략)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설> ④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u>농지를 소유하는 경우</u>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후단 삭제> 다만,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단서 신설>

5의2. ~ 9. (생략)

② (생략)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다만, 접경지역의 경우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5의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

협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u>접경지역에서 「건축법」에</u> <u>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u> <u>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u> <u>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u> <u>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u> <u>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u> <u>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u> <u>치하는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	---